붙임	하수도용 자재기준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③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 인증을 받은 제품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